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8. 27.(목) 10:00

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경제환경국 소관)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021호

나. 제 출 자 : 이경옥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0. 8. 19.

라. 회부일자 : 2020. 8. 19.

2. 제안이유
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지원 근거 및 규정을 신설하여 금천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주민공동체 활성화, 주민역량강화, 소규모 환경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규정 신설 (안 제13조 및 14조)

나. 비용을 지원한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15조)

다.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, 제30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0. 8. 19. ~ 8. 24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조례안 제안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사전단계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우리 구 현안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발의 되었음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3조는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
- 안 제14조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
- 안 제15조는 지원 금액의 환수 규정 신설
- 안 제16조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의2의 위임사항에 따라 규정을 명시함.

다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금천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26.>

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6.>

제30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,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12. 26.]